

언론조정신청사례

편집자 주

본 사례는 연구자료이므로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위해
인용할 때는 가주소·가명 등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단체가 ○○한우축제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저가 한우를 혼용 판매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추후보도)**

사건번호 : 2008충북조정1

청 구 명 : 추후·손배청구

신 청 인 : 전국한우협회 ○○군지부 (지부장 조 ○ ○)

피신청인 : 동양일보

증 재 부 : 충북중재부

접 수 일 : 2008. 1. 14.

처리결과 : 합의 (추후)

취 하 (손배)

보도내용

동양일보 : (1) 『○○ 황토탠우 일반육 혼용판매 말
쌩』 제하의 기사 (2007년 11월 9일자 3면)

내 용 : 충북 ○○군에서 얼마 전 개최된 '속리산
황토탠우 조랑우랑 브랜드육 행사(한우축제)'에서 행
사 목적과 달리 출처불명의 저가 소고기가 소비자들에
게 다량 판매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특히 행사 주최측에서 출처불명의 저가 소고기를

대형마트나 일반 정육점 등에서 구입,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 피해는 물론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
는 등 철저한 경찰수사가 요구되고 있다. (중략)

○○경찰서와 한우협회○○군지부, ○○축협 등에 따
르면 지난달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동안 ○○군 일원
에서 열린 한우축제에서 협회에서 생산된 한우(조랑
우랑)의 양이 크게 부족해 일반 정육점이나 롯데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한우를 구입해 일반음식점 등에서
판매했다. (중략)

도민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한우축제를 보기 위
해 찾은 소비자들이 행사장에서 사먹고 구입한 소고
기 대부분이 조랑우랑이 아닌 출처불명의 저가 소고
기인 셈인 것이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소고기 600g을
등급에 따라 3만 9,000원에서 1만 2,000원에 판매한 것
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그러나 출처불명의 저가 소고기 외에 수입
산 소고기와 불법 도살·가공된 소고기 등도 이날 행
사기간에 소비자들에게 판매됐을 것으로 보고 관련자
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중략)

그러나 축협관계자는 협회측 주장과 달리 "협회측
에서 행사가 열린 날이 추석 전이라 물량이 달려 소
고기를 공급해 줄 것을 부탁해 롯데마트나 정육점 등
에서 판매되는 2급 이하 값싼 소고기를 각 부위별로

‘모듬’ 형태로 납품받아 조합측과 일반음식점에 공급했다”고 설명했다. (후략)

(2) 『혼합육 판매 의혹 확산』 제하의 기사 (2007년 11월 12일자 3면)

충북 ○○군에서 열린 ‘○○한우 축제’에서의 저가 소고기 대량판매의혹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소고기 판매를 주관한 축협측이 정확한 매입·판매량에 대한 공개를 하지 않는데다 매입처마저 ‘말 바꾸기’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략)

문제는 축협이 행사 전 비축해놓은 한우가 출처불명이라는 점이다. 축협은 비축해놓은 한우 1,400kg도 농협청주물류센터에서 구입했다고 밝혔으나 본보 취재 결과 물류센터에서 ○○축협으로 공급된 한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축협측이 한우 매입처를 속인 대목이다.

이에 대해 축협 간부는 “언제 청주물류센터에서 구입했다고 했느냐. 비축된 한우는 행사 전에 서울 농협공판장을 비롯해 전국 농협공판장에서 사들인 것”이라며 “어느 지역에서 생산됐는지는 모르지만 한우는 맞다”고 말했다.

○○군과 축협이 행사 전 소비자들에게 조랑우랑 등 ○○한우만을 판매키로 해놓고 원산지를 알 수 없는 출처불명의 소고기를 판 것으로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후략)

(3) 『수입육 포함 여부 주목』 제하의 기사 (2007년 11월 13일자 3면)

충북 ○○한우축제에서의 출처불명 소고기 판매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수입소고기 등이 포함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중략)

그러나 축협이 추가 구입한 한우(296만 원)를 빼내며 3,700만 원 상당 소고기의 출처를 놓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판매된 소고기 중 수입소고기가 대량으로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후략)

(4) 『○○황토한우 품질은 ‘최고’ 한우협군지부 상도덕 ‘최저’』 제하의 기사 (2007년 11월 14일자 1면)

(전략) 그러나 전국한우협회 ○○군지부와 ○○축협이 지난 9월 개최된 ○○한우축제에서 황토한우가 부족하자 일반 한우는 물론 2등급 이하의 혼합육을 판매해 파문을 일으킨 것은 엄청난 사업비를 투자해 특화에 성공한 ○○한우의 이미지 손상과 사업 확대에 찬물을 끼얹은 결과를 초래했다. (후략)

(5) 『“○○축협 원산지 표시 위반”』 제하의 기사 (2007년 11월 20일자 3면)

충북 ○○한우축제에서 한우를 판매한 ○○축협이 전국 5개 지역에서 사들인 한우를 ○○한우인양 판매한데다 현행법까지 어겨가며 원산지 및 부위·등급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중략)

○○경찰서는 19일 ○○축협에 대해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혐의로 행정기관인 ○○군에 과태료부과처분을 의뢰키로 했다고 밝혔다. (중략)

이에 따라 경찰은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9,200만 원 상당의 타지역 한우를 행사참가자들에게 판매한 ○○축협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군에 통보할 계획이다. (후략)

(6) 『“한우협 군지부 발전 기회 삼겠다”』 제하의 기사 (2007년 11월 22일자 2면)

충북 ○○한우축제 혼합육 판매 파문과 관련, 전국한우협회 ○○군지부(○○한우협회)는 이번 사건을 자정의 계기로 삼고 향후 행사의 내실화 등에 주력키로 했다.

이번 ○○한우축제 혼합육 파문은 경찰 수사 결과

수입소고기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타지역 한우를 대량 매입,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서는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9,200만 원 상당의 타지역 한우를 축제 참가자들에게 판매한 ○○축협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군에 통보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본 지는 지난 2007년 11월 9일자 3면 『○○ 황토 한우 일반육 혼용 판매 말썬』, 11월 12일자 3면 『혼합육 판매 의혹 확산』, 11월 13일자 3면 『수입육 포함 여부 주목』, 11월 14일자 1면 『○○황토한우 품질은 ‘최고’ 한우협군지부 상도덕 ‘최저’』, 11월 20일자 3면 『“○○축협 원산지 표시 위반”』 제하의 기사 및 11월 22일자 2면 『“한우협 군지부 발전기회 삼겠다”』 제하의 기사에서 지난 2007년 9월 14일~15일 ○○읍에서 개최된 한우축제 시 유통된 가짜 ○○한우와 수입소고기 유통의혹에 대해 보도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기관의 조사결과, ○○경찰서에서는 수입소고기 저가 판매에 대해서 지난 2007년 11월 15일자로 무혐의 내사 종결했으며 ○○경찰서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출장소로 의뢰한 원산지 미표시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측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종결한 사실이 확인되어 한우축제에서 유통된 한우의 불법 유통에 대한 모든 혐의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입증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20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가짜 ○○한우 및 수입소고기 판매 의혹 혐의 없어’

• 본 문 : 동양일보는 지난해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종합면과 사회면, 지역면에 지난해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읍 □□리 △△공원에서 개최된 제3회 한우축제에서 유통된 가짜 ○○한우와 수입소고기의 유통 의혹에 대해 일련의 보도를 하면서 ‘수입육 포함 여부 주목’, ‘○○축협 원산지표시 위반’ 등의 제목을 사용한바 있다.

그러나 ○○경찰서의 조사 결과, 수입소고기 저가판매에 대해서 위법의 소지가 있는 것처럼 보도된 내용은 지난해 11월 15일 무혐의로 내사 종결했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출장소로 원산지의 미표시 부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측에서도 무혐의로 종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양일보는 경찰 수사결과에 대한 취재 과정에서 수입육에 대한 의혹 부분을 다룬 기사 내용이 마치 위법한 것처럼 보도되어 한우농가에게 피해를 주었을 소지가 있었던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한편, ○○군 한우협회 측에서도 향후 축제를 개최할 시에는 소비자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유의하겠다고 밝혀왔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동양일보 2008. 1. 18. 자 2면 하단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11월 9일자 ○○황토한우 일반육...)과 같게 하고, 내용은 본문 활자체로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동양일보 : 『가짜 ○○한우 · 수입소고기 판매의혹 혐의 없어』 제하의 기사 (2008년 1월 18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유성구청장이 술에 취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예산 의결이 늦어졌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청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대전조정1

청 구 명 : 정청 · 손배청구

신 청 인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청장 진 동 규)

피신청인 : 대전시티저널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8. 1. 2

처리결과 : 합 의 (정청)

취 하 (손배)

보도내용

대전시티저널 : 『유성구 의원들 분노 집행부 초긴장』
제하의 기사 (2007년 12월 22일자)

내 용 : (전략) 유성구의회는 지난 3일부터 146회 정례회를 열고 2008년도 유성구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을 거쳐 21일 제5차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했으나 본회의장에 구청장이 불참해 구청장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구청장이 술을 먹고 만취한 관계로 참석치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정회를 하는 등 사실상 본회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산회되어 2008년도 예산을 결정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유성구 의원들은 “구의 1년 예산을 편성하는 총책임자인 단체장이 의회에서 예산 의결하는데 술에 취해 참석하지 않아 의견청취 등을 할 수 없었던 것은 누가 보아도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고 주민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이라며 당연히 비판 받아 마땅한 것이다”라고 입을 모았다.

또한 A의원 등은 “단체장이 구의 1년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에 술에 취해 참석치 않았다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주민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판단된다”며 불만을 표했다. (중략)

앞으로 유성구 집행부는 만일 사태에 대비하여 예산안을 준비해야 되어 유성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처지에 놓였으며, 유성구청장 측은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도덕적으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정 시일 내에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한 유성구의 회 또한 부담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2007년 12월 22일자 『유성구 의원들 분노 집행부 초긴장』 제하의 기사에서 “유성구의회는 지난 3일부터 146회 정례회를 열고 2008년도 유성구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을 거쳐 21일 제5차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했으나 본회의장에 구청장이 불참해 구청장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구청장이 술을 먹고 만취한 관계로 참석치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정회하는 등 사실상 본회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산회되어 2008년도 예산을 결정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유성구 의원들은 ‘구의 1년 예산을 편성하는 총책임자인 단체장이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는데 술에 취해 참석하지 않아 의견청취 등을 할 수 없었던 것은 누가 보아도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고 주민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이라며 당연히 비판 받아 마땅한 것이다’라고 입을 모았다”고 보도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구청장이 2008년도 본예산안 의결을 위한 본회의에 만취해서 참석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본회의장에 구청장이 참석하지 않아 산회되어 2008년도 예산을 결정하지 못한 것이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산회한 것이 아니라 정회한 것이고 예산안 의결은 구청장 참석유무와 관계없이 의결이 가능한 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92,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 및 반론
• 내 용 : 대전시티저널이 지난 2007. 12. 22. 18:35 메인화면에 게재한 『유성구 의원들 분노 집행부 초긴장』이라는 제하의 기사 중 “유성구의회는 지난 3일부터 146회 정례회를 열고 2008년도 유성구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을 거쳐 21일 제5차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했으나 본회의장에 구청장이 불참해 구청장의 참석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구청장이 술을 먹고 만취한 관계로 참석치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정회하는 등 사실상 본회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산회되어 2008년도 예산을 결정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유성구 의원들은 ‘구의 1년 예산을 편성하는 총책임자인 단체장이 의회에서 예산 의결하는데 술에 취해 참석하지 않아 의견청취 등을 할 수 없었던 것은 누가 보아도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고 주민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이라며 당연히 비판 받아 마땅한 것이다’ 라고 입을 모았다”고 보도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성구 집행부는 만일 사태에 대비하여 준 예산안을 준비해야 되어 유성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처지에 놓였으며, 유성구청장 측은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도덕적으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 예산안 의결에 구청장이 꼭 참석하여야 하는 취지로 보도한 것은 취재의도와는 다릅니다.

또한 유성구청장은 2007. 12. 21. 예산안 의결일에 만취한 사실이 없고 구청장이 불참한 관계로 예산안 의결기한이 도과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대전시티저널 2008년 1월 9일자 09:00부터 1월 23일자 08:00까지 메인화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제목활자와 같은 크기(유성구, 의원들 분노 집행부 초긴장)로, 내용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대전시티저널 : 『정정 및 반론』 제하의 기사 (2008년 1월 8일자)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대략 총학생회의 비리에 대한 보도에서 신청인의 인터뷰를 동의 없이 방영하여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9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8. 1. 7.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MBC-TV : 「PD수첩」 프로그램 (2007년 12월 18일 23:05)

내 용 : (전략)

▷성우 : 소문의 진위에 대해 증언해 준 것은 총학생회 간부 출신인 ‘박 씨’ 였다.

▷박OO(가명) : 집 애기까지는 모르겠고 중형차 한 대 정도는 뽑을 수 있어요.

총학 안에 관리하는 식구들이 40명이예요. 그 40명 동생들한테 안 풀고 자기가 최대한 쪼잔하게 해서 챙기며는 소위 말해서 에쿠스 한 대는 사갖고 나간다고 봐도 돼요. 집은 오바고.

▷성우 : 박 씨가 주요 수입원으로 꼽은 것은 다양한 학내 사업이었다. 총학생회의 이름을 걸고 오간 협찬금의 액수는 상상을 초월했다.

▷박OO(가명) : 자판기 이게 하루라도 청소를 안 하면 진짜 드러워요. 사장님을 불러다가 안에 한 번 열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완전 개판이었어요. 학교 자판기 업자 바꿔 주라고 그 사진 다 찍어서 공문에다 뒤에 다 붙여서 학교에다 공문 내고 그러고 나서 다음날 500만 원 가지고 사무실로 찾아와요.

▷박OO(가명) : 내가 이 사람들에게 뭘 허락을 해주면 이 사람들은 당연히 나한테 해줘야 되는 식으로 돈을 쥐요.

명절 잘 쇠시라고, 한 100만 원씩 와서 갖다주고 총학생회장은 그거보다는 완전 많다고 보시면 돼요.

▷PD : 가장 덩치가 컸던 게 어떤거예요?

▷박OO(가명) : 그게 거의 졸업앨범이예요. 졸업앨범은 그냥 하나 주면 그사람들이 몇천만 원씩 찍워 버리니까.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MBC-TV는 지난 2007년 12월 18일 「PD수첩」 프로그램 『흔들리는 총학생회』 제하의 방송에서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학교 총학생회에 대해 취재· 보도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인에게 방송촬영 없이 구두 질의 및 답변형식으로 인터뷰를 진행할 것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교 총학생회 비리를 증언하는 신청인과의 인터뷰를 신청인의 추후 동의 없이 내

보내 신청인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신청인은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했으며 15,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합니다.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8년 1월 31일까지 금 3,000,000원을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고,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한 더 이상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신청인이 과거 본인이 지회장을 역임했던 단체의 소속 조합원들을 협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1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황 ○ ○

피신청인 : 환경일보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8. 1. 23

처리결과 : 합 의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환경일보 : 『경기도 자동차OOOO사업조합 말썽』 제하의 기사 (2008년 1월 3일자 9면)

내 용 : 자동차○○○○조합 전임○○시 지회장을 (약 8년) 역임한 황모 씨는 지회장을 지내며 조합원들에게 전장품 및 부품을 판매해오다 2007년 11월 지회장 선거에서 떨어지자 전국자동차 ○○○○○국민운동본부 ○○시지부를 설립하여 자동차○○○○조합원들에게 우리 단체에 가입하지 않으면 집중단속하겠다고 하며 우리 단체는 사법권도 있다고 협박을 일삼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현 회원인 윤모 씨는 전임 황모 씨가 지회장을 역임하면서 조합원들 중 자기 부품을 팔아주지 않는 회원사에게는 협회에 보고하여 지명단속 및 협박을 일삼았던 사람이라며 경찰에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강력히 처벌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1월 3일자 9면 『경기도 자동차○○○○사업조합 말썽』 제하의 기사에서 전 지회장인 황모 씨가 조합원들에게 자동차 부품을 팔아주지 않는 회원업소는 협회에 보고하여 지명단속을 하겠다고 협박 및 강매를 하였고 2007년 11월 지회장 선거에 떨어지자 한국자동차○○○○국민운동본부 ○○시지부를 설립하여 자신은 사법권을 가지고 있고 가입을 하지 않으면 집중단속하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지회장 선거는 2007년이 아닌 2006년에 있었으며, 전 지회장 황모 씨가 지회장을 역임하면서 다른 조합원들에게 물품 강매를 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됐고 사법권 발언 역시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경기도 자동차○○○○사업조합 관련 반론 보도문

• 내 용 : 지난 2008년 1월 3일 사회 지방면 『경기도 자동차○○○○사업조합 말썽』 제하의 기사에서 전임 ○○지회장을 지낸 황모 씨가 조합원들에게 부품을 판매해왔으며, 지회장 선거에서 떨어진 이후 타 단체 지부를 설립하여 해당 단체에 가입할 것을 협박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선거는 2007년이 아닌 2006년에 일어난 것으로 바로잡고, 황모 씨는 타 단체 회원에게 협박하며 사법권에 대한 발언을 하지 않았으며, 현회원 윤모 씨의 말대로 황모 씨가 지회장을 역임하면서 지명단속 및 협박을 하여 강매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환경일보 9면 좌측하단에 상자기사로 위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하여 2008년 2월 15일(토요일, 공휴일 제외)까지 게재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2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나머지 정정보도를 포기하며,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게 다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환경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8년 2월 15일자 9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 노조가 대선 후 사장 퇴진 등을
조건으로 수신료 인상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과 물밑협상을 했다는 관측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 (위원장 박 ○ ○)

피신청인 : 한겨레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8. 1. 2

처리결과 : 각 합의

보도내용

한겨레 : 『방송계 3대 현안 어떻게 돼가나』 제하의 기사 (2007년 11월 28일자 28면)

내 용 : (전략) 이와 관련해 방송계에서는 12월 대통령 선거 이후, 정연주 사장 퇴진 등과 교환조건으로 수신료 인상안을 처리해준다는 물밑 협상을 한나라당과 한국방송 노조가 했다는 관측이 나돌았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당사의 한나라당과 한국방송 노조 간의 수신료 인상안과 관련한 물밑 협상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 내 용 : 본지는 지난해 2007년 11월 28일자 28면 『방송계 3대 현안 어떻게 돼가나』 제하의 기사에서 “방송계는 12월 대통령 선거 이후, 정연주 사장 퇴진 등과 교환 조건으로 수신료 인상안을 처리해준다는 물밑 협상을 한나라당과 한국방송 노조가 했다는 관측이 나돌았다”고 보도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2007년 11월 28일자 28면 『방송계 3대 현안 어떻게 돼가나』 기사관련 정정보도=본지는 한국방송 노조가 대선 이후 사장 퇴진 등을 조건으로 수신료 인상 문제에 대하여 한나라당과 물밑 협상을 했다는 관측이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확인 결과 한국방송 노조는 수신료 인상 문제로 한나라당과 협상을 벌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보도에 대하여 한국방송 노조에 사과드립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8년 1월 17일까지(토요일·공휴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한겨레 2면에 게재하되, 제목은 한겨레의 통상적인 정정보도문 제목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항의 보도와 함께 한겨레 인터넷 홈페이지에 저장되어 있는 조정대상 기사 아래에 게재하여 조정대상 기사를 검색하면 함께 검색되도록 한다.

-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겨레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8년 1월 15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총선 불출마를 하는 대신 신청인 아내의 공천신청을 돕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7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헤럴드경제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8. 2. 12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헤럴드경제 : 『총선정국 ‘바람난 가족’ 스타일-부창부수』 제하의 기사 (2008년 2월 5일자 5면)

내 용 : (전략) ○○갑에서는 한나라당 공천에 권○○(48) 씨가 남편인 김○○(52) ○○갑 위원장을 대신해 출사표를 던졌다. 김 위원장이 사전선거운동 소지가 있어 스스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아내인 권 씨를 도와 진수희 의원과의 당내 공천에서 승리하고 현역 의원인 대통합민주신당의 최재천 의원을 꺾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총선정국 ‘바람난 가족’』 관련 정정 및 사과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2월 5일자 5면 『총선정국 ‘바람난 가족’ 스타일-부창부수』 제하의 기사에서 김○○ 위원장이 불출마를 하는 대신 아내 권○○ 씨의 공천신청을 돕는다고 보도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김○○ 위원장은 권○○ 씨가 공천을 신청하도록 도운 것이 아니라 아내의 공천신청을 강력하게 만류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바람난 가족’으로 선정적으로 표현하고 ‘부창부수’로 사실과 전혀 다르게 보도함으로써 김○○ 위원장과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서도 사과합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2월 5일자 정치면에 『총선정국 ‘바람난 가족’ 스타일-부창부수』라는 제목으로 김○○ 위원장이 불출마를 하는 대신 아내 권○○ 씨의 공천신청을 돕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김○○ 위원장은 권○○ 씨가 공천을 신청하도록 도운 것이 아니라 아내의 공천신청을 강력하게 만류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바람난 가족’이라는 다소 선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부창부수’로 사실과 다르게 보도하여 김 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8년 2월 28일까지(토요일·공휴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헤럴드경제 5면 원보도 게재부분에 1단 크기로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헤럴드경제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8년 2월

22일자 5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대통령 당선인 기자회견장에서 자신의 이름이 붙은 좌석이 없자 어리둥절해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 호 영

피신청인 : 이데일리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8. 1. 15.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이데일리 : 『(이모저모) “잘못하다 자리 뺏기겠네”』

제하의 기사 (2008년 1월 14일자 정치면)

내 용 : (전략) 회견장에 뒤늦게 도착한 주호영 당선자 대변인은 자신의 명단이 붙은 좌석이 없어 다른 좌석을 하나하나 훑어보며 어리둥절해 하는 모습 (중략)

이 대변인은 주 대변인 좌석에 대해서는 웃으면서 “원래 비서실은 뒤에 가는 거예요”라고 한마디. 주 대변인 자리는 전재희 한나라당 최고위원 뒤편에 급조됐고, 결국 이날 당선자와의 거리를 기준으로 한 대변인들 좌석 배치는 주호영, 나경원(한나라당 대변인), 김인규(당선자 비서실 공보팀장), 이동관 대변인 순으로 조정됐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대통령 당선인 기자회견 자리배치 두고 대변인들 간 신경전은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월 14일자 정치면 『(이모저모) “잘못하다 자리 뺏기겠네”』 제하의 기사에서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이 신년기자회견장에서 좌석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어리둥절해 했으며 주 대변인의 좌석을 급조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주 대변인은 기자회견의 사회자로서 별도의 사회자석이 있기 때문에 좌석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거나 좌석명단이 없어 어리둥절해하지 않았으며, 좌석 또한 급조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주호영 대변인 관련)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지는 지난 1월 14일 『(이모저모) 잘못하다 자리 뺏기겠네』 제하의 기사에서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이 자신의 명단이 붙은 좌석이 없어 다른 좌석을 훑어보며 어리둥절해 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주 대변인은 당선인의 앞 좌석에 앉은 사람까지만 악수한 뒤 단상에 오르기로 계획되어 있어 참석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좌석을 훑어본 것이라고 밝혀와 이를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8년 1월 25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이데일리의 경제섹션 초기화면에 상기 정정보도문을 목록에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연결되도록 하고 제목은 조정대상기사 제목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며 본문은 조정대상기사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저장되어 있는 조정대상기사 아래에 게재하여 조정대상기사를 검색하면 함께 검색되도록 한다.

•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이데일리 : 『(주호영 대변인 관련)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8년 1월 25일자 경제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허위 논문게재증명서를 제출해 대학 측으로부터 고발당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추후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59

청 구 명 : 추후·손배청구

신 청 인 : 최 ○ ○

피신청인 : 연합뉴스

접 수 일 : 2008. 3. 3

처리결과 : 각 합의

보도내용

연합뉴스 : 『허위 논문증명서 제출한 전 대학강사 입건』 제하의 기사 (2008년 1월 11일자 사회면)

내 용 : 인천지방경찰청은 연구실적 저조 등을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하자 이의신청을 하면서 허위 논문게재증명서를 대학에 제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 방해)로 인천 모 대학 전 강사 최모(32. 여)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연구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재임용심사에서 탈락하자 모 학회 출판이사인 같은 대학 이모(52) 교수를 통해 허위 논문게재증명서를 발급받아 대학에 제출해 대학의 학사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학회 관련자 등을 상대로 증명서 발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 제 목 : 논문게재증명서 허위 아닌 것으로 밝혀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월 11일자 사회면 『허위 논문증명서 제출한 전 대학강사 입건』 제하의 기사에서 인천 모 대학 최모 교수가 연구실적 저조 등을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한 뒤 이의 신청과정에 허위 논문게재증명서를 제출하여 인천지방경찰청에 위계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입건되었다고 보도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인천 모 대학 최모 교수가 제출한 논문게재증명서는 허위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에 따라 대학 측이 인천지방경찰청에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최모 교수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인천지방경찰청에서 2월 11일자로 무혐의 처분이 나왔습니다. 연구업적 역시 2년간 논문 총 6편, 학술대회 발표 논문 총 6편으로 모두 12편의 실적이 있었으며, 이는 대학이 요구하는 2편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써 업적 역시 충분했으나, 대학 측의 조직적인 심사평 조작에 의한 재임용탈락 혐의 등의 부당한 행정에 대해서 오히려 현재 인천지방경찰청 등 수사기관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인천 A대학 교수 '허위 논문게재예정증명서' 혐의 벗어
- 내 용 : 인천지검은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허위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대학 측에 의하여 고발된 인천 모 대학 최모 교수에 대해 2월 11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인천지검은 최 교수가 제출한 논문게재예정증명서가 재임용 심사위원회의 공무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판단,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 교수는 관련 학회에서 발급받은 정식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학교 측에 제출했으며, 임용기간에 발표한 연구논문 편수도 대학 측의 요구수준을 크게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 피신청인은 연합뉴스 홈페이지(<http://www.yonhapnews.co.kr>) 지역(인천)면에 2008년 3월 21일(토요일, 공휴일 제외)까지 위 보도문을 게재하고, 원 조정대상기사는 삭제한다.

pnews.co.kr) 지역(인천)면에 2008년 3월 21일(토요일, 공휴일 제외)까지 위 보도문을 게재하고, 원 조정대상기사는 삭제한다.

- 피신청인은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 협조공문을 보내 원 조정대상기사를 삭제하도록 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제2항, 제3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나머지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을 포기하며,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다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연합뉴스 : 『인천 A대학 교수 '허위 논문게재예정증명서' 혐의 벗어』 제하의 기사 (2008년 3월 14일자 인천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